

이사회 규정

한세엠케이 주식회사

목 차

- 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【목적】
- 제 2 조 【적용범위】
- 제 3 조 【권한】

- 제 2 장 구 성
- 제 4 조 【구성】
- 제 5 조 【의장】
- 제 6 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

- 제 3 장 회 의
- 제 7 조 【종류】
- 제 8 조 【소집권자】
- 제 9 조 【소집절차】
- 제 10 조 【결의방법】
- 제 11 조 【질서유지】

- 제 4 장 부의사항
- 제 12 조 【부의사항】

- 제 5 장 위임
- 제 13 조 【위임】
- 제 14 조 【이사회 내 위원회】

- 제 6 장 기타사항
- 제 15 조 【의사록】
- 제 16 조 【간사】
- 제 17 조 【규정의 개폐】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목적】

본 규정은 한세엠케이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적용범위】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【권한】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 3 조 제 3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【구성】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【의장】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 까지로 한다.
- ③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- ④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선임 대표이사로 한다.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6 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

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【종류】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【소집권자】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 조 제 2 항에서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【소집절차】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늦어도 회의 전일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9 조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10 조 【결의방법】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,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【질서유지】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4 장 부의사항

제 12 조 【부의사항】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4) 재무제표의 승인
- 5) 정관의정관의 변경
- 6) 자본의자본의 감소
- 7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10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11)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12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13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14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- 15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16) 이사의 보수
- 17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18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19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5)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6) 공동대표의 결정
- 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8)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12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등
- 13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- 14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
- 15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- 16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- 17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18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19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20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투자에 관한 사항
- 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4) 결손의 처분
- 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6) 신주의 발행
- 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9) 전환사채의 발행
- 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14)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,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
- 2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
- 3) 대표이사의 선임·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
- 4) 이사의 직위, 직무의 위촉과 해촉

5. 기타사항

- 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4)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5 장 위 임

제 13 조 【위임】

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 【이사회 내 위원회】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6 장 기타사항

제 15 조 【의사록】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 15 조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6 조 【간사】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7 조 【규정의 개폐】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본 규정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본 규정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본 규정은 2019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